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3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문진석 · 김준혁 · 박용갑
이주희 · 이성윤 · 허영
서미화 · 전용기 · 김현정
김영배 · 채현일 · 김기표
김동아 · 김남근 · 윤종균
오세희 · 이훈기 · 안태준
박홍배 · 박상혁 · 문금주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 중 제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 ----- ----- ----- ----- ----- ----- ----- ----- -----하며,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	④ ----- ----- ----- ----- ----- -----<후단 삭제> 다만, 회의 중 제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u>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u> <u><단서 신설></u> ⑤ · ⑥ (생략) ⑦ <u>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u> <u><신설></u> ⑧ ~ ⑩ (생략)	<u>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6항에</u>----- ----- ----- ----- ----- ----- -----. ⑧ <u>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하여야 한다.</u>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	--